서울특별시 수목원 관리·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 2021

2024년 9월 3일 환경수자원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**발의일자 및 발의자** : 2024년 8월 12일, 임만균 의원

나. 회부일자 : 2024년 8월 14일

다. 상정일자 : 제32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

(2024년 9월 3일 상정, 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[제안 설명자: 임만균 의원]

가. 제안이유

○ 서울특별시 공립수목원인 서울식물원 및 푸른수목원의 효율적인 수목원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목유전자원의 수집·증식·보존·관리와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·산업적 연구를 촉진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1) 수목원 관리·운영에 관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(안 제1조)
- 2)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(안 제2조)

- 3) 수목원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- 4) 수목원이 수행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
- 5) 수목원 운영 및 이용, 입장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~제10조)
- 6) 수목원 내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1조)
- 7) 문화 프로그램 및 연간회원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2조, 안 제13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비대상사유서) 참조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

가. 개요

○ 본 제정안은 서울특별시 공립수목원인 서울식물원 및 푸른수목원 등의 효율적인 수목원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목유전자원의 수집·증식·보존·관리와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·산업적연구를 촉진하려는 것임.

나. 검토의견

1) 조례 제정의 타당성

- 「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)은 수목원과 정원의 조성· 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유용한 수목유전 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, 수목원·정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01년 제정1)되었음.
- 법 제4조(수목원 및 정원의 구분)제1항²)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·운영 하는 '공립수목원'을 구분하고 있으며, 제5조제4항³)과 제11조⁴)에서는

- 2) 제4조(수목원 및 정원의 구분) ① 수목원은 그 조성 및 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 - 1. 국립수목원: 산림청장이 조성 · 운영하는 수목원
 - 2. 공립수목원: 지방자치단체가 조성 · 운영하는 수목원
 - 3. 사립수목원: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 운영하는 수목원
 - 4. 학교수목원:「초・중등교육법」및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이 교육지원시설로 조성・운영하는 수목원
- 3) 제5조(국립수목원 등) ④ 공립수목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향토 수목유전자원의 보전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한다.
- 4) 제11조(입장료 등) ① 수목원을 운영하는 자는 수목원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의 징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되, 공립수목원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^{1) 「}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」[시행 2001. 9. 29.] [법률 제6446호, 2001. 3. 28., 제정] 「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[시행 2015. 7. 21.] [법률 제13027호, 2015. 1. 20., 일부개정]

각각 '공립수목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'과 '공립수목원의 입장료 등'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.

- 서울시는 푸른수목원5) 공원 전체 면적(200,956㎡) 중 103,354㎡ 구역을
 지난 2018년 공립수목원 제1호로 등록한 바 있으며, 2019년 개원한 서울
 식물원6)에서는 전체 면적(505,350.9㎡) 중 105,731㎡ 구역을 2021년
 공립수목원 제2호로 등록하여 운영 중에 있음.7)
- 본 제정안은 '공립수목원'에 대하여 법에서 규정하고 위임한 사항을 반영 하고, 수목원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과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 사업을 규정하여 촉진하려는 것으로써 시의적절하다 판단됨.

2) 조례안 검토

- 세부적으로 안 제3조(시장의 책무)는 '생물 종 다양성 구현', '수목원 활성화', '식물 관련 문화 확산' 등 수목원을 통한 시장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수목원 본연의 목적 및 기능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이 될 것이라 기대됨.
- 안 제4조는 수목원이 수행할 사업으로 식물유전자원과 관련하여 수집·증식· 보존, 학술적·산업적 조사, 데이터베이스 구축, 국내외 수목원간 정보 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, 그 밖에 시민의 여가· 문화 활동 활성화, 교육, 전시, 문화 사업을 포함하여 폭넓게 명시하고 있음.

⁵⁾ 푸른수목원(구로구 항동 10-3 일대): 근린공원-도시지역권, 면적: 200,956㎡

⁶⁾ 서울식물원(강서구 미곡동 812): 근린공원-도시지역권, 면적: 505,350.9㎡

⁷⁾ 한편, 서울대공원(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일대, 근린공원-광역권)은 전체면적(6,670,000㎡) 중 229,759㎡ 구역을 2016년 경기도 공립수목원 제5호로 등록하여 운영 중임

- 안 제5조는 수목원의 개원 및 휴원에 관한 사항으로 매일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주제원(온실)은 수목관리, 시설점검 등을 위해 매주 월요 일에 휴원하도록 하고 있으며, 그 밖에 시민의 안전상 문제, 식물 보호, 시설점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휴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안 제7조는 법 제11조에서 위임된 입장료에 관한 사항으로 서울식물원 내주제원(온실) 입장료(개인 및 단체)를 현재 시행 중인 요금과 같은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견은 없으며8), 이와 별도로 연간회원권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는바, 입지 위치 및 규모(면적, 보유종) 정도가 비슷한 국립세종수목원의 연회비 3만원을 기준으로 하되, 청소년, 어린이 대상으로 차등 (감면)하여 규정한 것으로 파악됨9).
- 안 제8조는 입장료 면제 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'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'되어 있는바, 본 제정안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¹0)과 「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 례, 제20조¹¹)를 준용하고 있음.

한편, 현행 '도시공원 조례'에서 규정할 때와 달라진 점은 「서울특별시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제5조12)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13)

⁸⁾ 푸른수목원은 규모가 작고 보유종이 적어 무료로 운영되고 있음

⁹⁾ 국립세종수목원 현황(규모: 65ha, 보유종: 2,035종) 국립세종수목원 연간회원제 연회비: <일반회원(만 7세이상 65세 미만): 30,000원> 서울식물원 현황(전체 규모: 50.5ha, 수목원 규모: 10.6ha, 보유종: 5,310종) 서울식물원 연간회원제 연회비(안): <일반회원 30,000원, 청소년 24,000원, 어린이 18,000원>

¹⁰⁾ 안 제8조제1항제1호~제11호, 제15호, 제16호

¹¹⁾ 안 제8조제1항 제12호, 제13호, 제17호~제19호

^{12) 「}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제5조(우대)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시에서 설치·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·입장료·수강료·주차료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

을 새롭게 포함하는 것으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점에서 별다른 이견은 없음.

○ 안 제11조는 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으로 법 제17조의214) 및 법 시행령 제8조의215)를 준용하고 있으며, 그 밖에 시민들에게 위화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행위, 시설물 및 전시물을 파손하는 행위,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바, 온실 등 시민의 이동 동선 및 식물관리가 중요한 곳을 고려할 때 적절한 사항이라 판단됨.

를 제시하여야 한다.

¹³⁾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^{1. &}quot;병역명문가"란 3대(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)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「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」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.

^{2. &}quot;예우대상자"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(이하 "시"라 한다)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.

^{3. &}quot;예우대상자 가족"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, 배우자, 자녀를 말한다.

¹⁴⁾ 안 제11조제1호 및 제2호

¹⁵⁾ 안 제11조제3호~제10호

[붙임]

□ 서울식물원 조성 개요

○ 위 치 :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로 161 일대

○ 규 모 : 공원면적: 505,350.9 m²/ 수목원 등록면적 : 105,731 m²

○ 조성내용 : 도시형 식물원 + 호수공원

○ 공 사 비 : 2.156억원(보상 및 기반조성비 포함 시 총 7.422억원)

구 분	사업비(억원)	비고	
공원관련시설	2,156		
공 원	1,054	열린숲, 호수원, 주제원, 습지원	
건축물	837	식물문화센터, 지하주차장, 정원문화학교 등	
시설물	265	한강연결보행교, 나들목, 양천길 교량 등	

○ 공사기간 : '15. 11. ~ '20. 9.

o 개 원 : 2019. 5. 1. (임시개원 : 2018. 10. 11.)

○ 주요시설

- 건 축 물 : 식물문화센터(지하2층/지상4층) 등 12개동, 연면적 총31,292.54m²

- 기타시설: 휴게·편의시설 9종, 어린이놀이시설 3종, 수경시설 4종, 육교 1종

○ 보유수종 : 5,508종, 2,262,731본

- 목본류 1.975종, 615.995본 - 지피초화류 3.533종, 1.646.736본

○ 위 치 도 (※수목원 구역: 빨간 점선)



□ 푸른수목원 조성 개요

○ 위 치 : 서울시 구로구 연동로 240번지 일대

○ 규 모 : 공원면적: 200,956m²/ 수목원 등록면적 : 103,354m²

○ 공 사 비 : 518억원(보상 및 공사)

○ 공사기간 : 2009. 10. ~ 2013. 5.

○ 개 원 : 2013. 6. 5.(2018. 10. 수목원 등록)

○ 주요시설 : 숲교육센터 753.62m², 북카페 100m², 안내센터 40m² 등

○ 보유수종 : 1.776종, 494.763본

- 목본류 917종, 65,638본 - 지피초화류 859종, 429,125본

○ 위 치 도 (※수목원 구역: 빨간 점선)



□ 서울대공원 수목원 개요

○ 위 치 :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일대

○ 규 모 : 공원면적: 6,670,000 m²/ 수목원 등록면적 : 229,759 m²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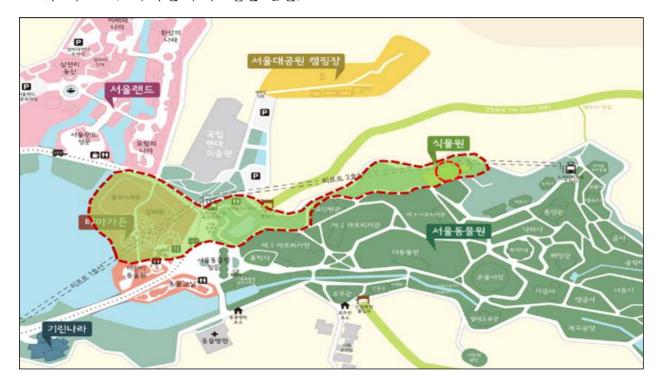
○ 개 원: 1985. 5. 1.

○ 주요시설 : 전시온실, 재배온실, 식물표본전시관, 야외주제원 등

○ 보유수종 : 1,587종, 168,696본

- 목본류 509종, 77,030본 - 지피초화류 1,078종, 91,656본

○ 위 치 도 (※수목원 구역: 빨간 점선)



- 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- 6. 토론요지 : 생 략
- 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- 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- 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 수목원 관리·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제5조 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수목원"이란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·증식·보존·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·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.
- 2. "수목유전자원"이란 수목 등 산림식물(자생·재배 식물을 포함)과 그식물의 종자·조직·세포·화분(花粉)·포자(胞子) 및 이들의 유전자 등으로서 학술적·산업적 가치가 있는 유전자원을 말한다.
- 3. "주제원"이란 서울식물원 내 다양한 식물들이 전시되어 있는 주제정원과 온실을 말한다.
- 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수목원을 통하여 생물 종 다양성을 구현하는 등 수목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.
- ② 시장은 식물 관련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

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사업) 수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- 1. 시민의 여가·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업
- 2. 식물유전자원의 수집·증식·보존·복원·관리 및 전시
- 3. 식물유전자원에 관한 학술적·산업적 조사 및 연구
- 4. 식물유전자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
- 5. 식물유전자원·식물원 관련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
- 6. 식물유전자원에 관한 자연학습 및 관련 행사의 개최
- 7. 국내외 수목원 간의 식물유전자원 및 이에 관한 정보의 교류 등 유기적인 협력
- 8. 각종 식물표본의 수집·제작 및 수장(收藏) 관리
- 9.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식물 관련 교육, 전시, 문화 사업
- 10. 그 밖에 수목원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업
- 제5조(개원 및 휴원) ① 수목원은 매일 개방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주제 원은 매주 월요일에 휴원하되, 월요일이 공휴일(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 한 규정」에 따른 공휴일 및 「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지방공휴 일을 말한다)일 때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에 휴원한다.
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목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임시로 휴워할 수 있다.
 - 1. 수목원 시설의 이용에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
- 2. 수목원 시설의 안전점검이나 개보수를 위하여 휴원이 필요한 경우
- 3. 그 밖에 시장이 운영상 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임시 휴원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해당 수목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.
- 제6조(관람 및 매표시간) ① 수목원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시장은 수목원 운영상 필요한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
 - 1. 수목원(주제원 제외): 상시 관람 가능
 - 2. 주제원
 - 가. 3월부터 10월까지: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
 - 나.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: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
 - ② 주제원의 입장권 매표시간 및 입장시간은 관람 시작시간부터 관람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.
- 제7조(입장료) ① 시장은 주제원 내 식물의 유지, 관리운영 및 관람자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주제원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.
 - ② 주제원의 입장료는 별표 1과 같다.
- 제8조(입장료의 면제)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.
 - 1. 국빈,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자

- 2. 6세 미만 및 65세 이상인 사람
- 3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
- 4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- 5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- 6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
- 7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수급자
- 8.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
- 9. 「산림보호법 시행규칙」 제39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 랑지도워 및 숲사랑지도위원
- 10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·18민주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- 11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- 12.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
- 13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
- 14. 「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른 예우대

- 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
- 15.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
- 16.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18세 이하의 아동
- 17. 공익 또는 학술목적으로 수목원 내에서 조사연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
- 18.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을 소지한 사람
- 19. 서울특별시에서 발급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또는 다둥이 행복 카드에 등재된 가족
- 20. 그 밖에 시장이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-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입장료를 면제 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.
- ③ 입장료의 부분 감면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」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따른다. 다만, 「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」 제20 조제2항제1호는 제외한다.
- 제9조(시설의 이용허가) ① 수목원 내 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와 이용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설의 이용허가(이하 "이용허 가"라 한다)를 받아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이용허가 및 이용허가 시 이용료 징수에 관하여는 「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」의 규정에 따른다.
- 제10조(이용허가의 취소 등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
- 경우 이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- 1. 이용허가의 목적이나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
- 2.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
- 3. 시설 및 식물 등의 훼손이 우려된다고 판단될 경우
- 4. 특정 개인·기관·단체 등의 영리목적 행사로 판단될 경우
- 5. 그 밖에 수목원 운영, 이용질서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- 제11조(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) 누구든지 수목원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1. 식물을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말라죽게 하는 행위
- 2. 식물의 꽃과 열매, 토석 등을 무단으로 채취하거나 훼손하는 행위
- 3. 오물이나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에 버린 행위
- 4. 심한 소음이나 악취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
- 5. 야영, 취사 및 불을 피우는 행위
- 6. 음주, 흡연 및 무단방뇨 행위
- 7. 상업 또는 광고 행위
- 8. 주차장 등 지정된 장소 외의 지역에서 주·정차하는 행위
- 9.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(다만, 장애인·노약자 및 임산부가 휠체어를 이용한 출입 또는 공무로 출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
- 10. 반려동물과 동반 입장하는 행위(다만, 장애인이 보조견과 동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

- 11. 종교의식, 집단오락 등 다른 시민에게 위화감을 주는 행위
- 12. 각종 시설물 및 전시물을 파손·훼손하는 행위
- 13.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음식물 섭취 행위
- 14. 다른 관람자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
- 15. 그 밖에 수목원 관리·운영·이용자 안전·질서유지에 위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행위
- 제12조(교육·전시·문화 프로그램 운영) ① 시장은 식물과 관련된 지식을 시민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·전시·문화 프로그램(이하 "프로그램"이라 한다)을 운영할 수 있다.
 - ② 시장은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충당 등을 위하여 참여자로부터 일정액의 수강료 또는 참가비를 징수할 수 있다.
 - ③ 제2항에 따라 징수하는 수강료 및 참가비에 관하여는 「서울특별시도시공원 조례」의 규정에 따른다.
- 제13조(연간회원제 운영) ① 시장은 수목원의 발전과 시민이 수목원 운영 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연간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.
 - ② 시장은 연간회원제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가입비를 받을 수 있고, 가입한 사람에게 입장료, 교육·문화프로그램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할수 있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수목원 연간회원제 비용에 관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.

- 제14조(요금의 환불) 사전 납부된 주제원 입장료·연간회원제 가입비·시설 이용료·프로그램 수강료 및 참가비는 환불할 수 있으며, 환불에 관한 세 부적인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」의 규정을 따른다.
- 제15조(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) ① 시장은 수목원 관리·운영과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.
 - ② 자원봉사자에게는 「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제10조의2에 따라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, 같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포상할수 있다.
- 제16조(수목원 홍보 등) ① 시장은 수목원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과 기념품을 제작할 수 있다.
 -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.
 - 1. 행사, 설문에 참여한 사람
 - 2. 전시참여 작가 및 국내외 초청 인사
 - 3. 콘텐츠 제공, 취재 협조, 방송매체 홍보 지원 등을 하거나 기타 수목 원 홍보에 기여한 사람
 - ③ 제1항에 따른 홍보물과 기념품을 직접 판매할 경우 판매대금은 서울특별시의 수입으로 한다.
- 제17조(편의시설의 설치 운영) ① 시장은 수목원 관람자의 편의를 위하여

수목원 내외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 및 임대할 수 있다.

- 1. 편의점 및 휴게음식점
- 2. 기념품 판매점
- 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
 - ②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과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」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점용·사용 허가를 얻어야 한다.
- 제18조(준용) 수목원 관리·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, 「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,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도시 공원 조례」를 준용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서울식물원 내 주제원 입장료(제7조제2항 관련)

구 분		사용기준	금 액(원)
1일 권	개 인	어 른 l회 청소년 l회 어린이 l회	5,000 3,000 2,000
	단 체	어 른 l회 청소년 l회 어린이 l회	3,500 2,100 1,400
1년 권 (연간회원)	어 른	구매일로부터 1년	30,000
	청소년		24,000
	어린이		18,000
	가족회원		40,000 (추가비용: 1명당 10,000)
	무료대상		무 료

※(주) ○ 어린이 : 7세 이상 12세 이하, 초등학생

○ 청소년 : 13세 이상 18세 이하, 학생증 소지 중고등학생

○ 어 른 : 19세 이상 65세 미만

○ 단 체: 유료입장객 30명 이상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

o 가족회원 : 동일세대 구성원, 직계존·비속 2명 기준